

대학원 학칙 신학대학원 시행세칙[개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신학대학원은 서강대학교의 학칙 제1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과 정신에 입각하여 가톨릭 신학 및 철학을 비롯한 수도자, 성직자 양성에 관련된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가톨릭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로서의 인격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대학원이다. 이 세칙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시행에 있어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신학대학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신학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3조 (수업연한)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하고,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3> <개정 2011. 1. 22>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조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 재학연한은 8학기, 박사학위 재학연한은 10학기로 하고, 석·박사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연한을 2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2>

② 전항에 있어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 휴학연한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입학, 재입학

제5조 (입학전형)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은 매년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석사학위 과정 입학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다.

1. 서류심사

2. 면 접

②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영어시험, 면접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 입학 전형방법은 영어시험과 전공시험 그리고 면접에 의한다. <개정 2011. 1. 22>

1. 영어시험: 다만, TOEIC 800점, TOEFL CBT방식 240점 이상이거나 IBT방식 94점 이상인자 또는 영어로 학위논문을 출판한 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인정으로 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인된 기관의 해당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입학원서 접수시 해당성적표 제출)

2. 전공시험: 전공과 관련된 필기시험을 치른다. 단, 가톨릭사회복지학 전공의 경우는 전공시험을 제외 한다.
3. 면 접: 과정이수(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를 위한 적성 및 인격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6조 (영어시험 및 전공시험) 신학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대한 배점 및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22>

- ① 영어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취득한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60분간 실시한다.
- ② 전공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90분간 실시한다.

제7조 (면접) 면접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해당학과 전임교수 2인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해당학과 전임교수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전공에 대한 지식 및 학문에 대한 열의 등을 기본항목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1. 1. 22>

제8조 (합격자 사정기준) 다음의 각호 기준에 따라 사정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1. 석사학위 과정의 합격자 사정은 전공별로 배정된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과 서류전형의 점수를 합한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의 합격자 사정은 박사정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과 서류전형, 영어 점수를 합한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 박사학위 과정의 합격자 사정은 전공 분야별 면접과 영어시험 및 전공시험(가톨릭사회복지학 전공은 전공시험 제외)의 점수를 합한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1. 1. 22>
2.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영어시험에서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3. 박사학위과정 면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영어 및 전공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개정 2008. 1. 14>

제9조 (합격자사정) 학과내규에 따라 전체 교수회의 및 전공분야별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1차 사정하며,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1. 1. 22>

제10조 (입학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개강 이전에 등록금 반환 신청기간을 따로 정한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여 반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 포기각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신학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 1. 22>

- ③ 제1항의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④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9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입학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 (재입학) ①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후에 재입학 및 특별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기 초 등록개시일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원서 또는 특별재입학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 1. 14>

② 재입학을 한 자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본 세칙 제41조 ②항에 규정된 학위논문제출 연한이 만료되어 제적된 자 중 특별재입학한 경우 잔여 재학기간은 3년(6학기)이내로 하며, 휴학 및 논문학기 연장 신청은 불허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제12조 (등록의 종류 및 등록금)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재입학등록, 논문등록 및 시험등록으로 구분하며, 입학등록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가 최초로 하는 등록을, 학기등록은 교과목 수강을 위한 등록을, 논문등록은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을 위한 등록을, 시험등록은 종합시험 또는 외국어시험 응시를 위한 등록을 뜻한다.

②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에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석·박사학위 과정에서 각각 제5학기(석·박사통합과정 10학기)를 초과하여 논문등록을 하는 학생은 논문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기에 등록하여 논문지도를 받는다.

⑤ 석·박사학위 과정에서 각각 제5학기(석·박사통합과정 10학기, 연구과정은 제2학기)를 초과하여 학기등록을 하는 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2>

⑥ 소정기간에 학기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은 그 기간 내에 “추가등록 신청원”을 제출하여 신학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제6항의 추가등록 승인을 얻은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말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추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이월기준) ① 학생은 신학대학원 행정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한다. 반환은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월은 학업을 일시 중단하

는 경우(휴학)에 각각 적용된다.

1.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만,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퇴하는 경우에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가. 직전 학기에 제적경고를 받은 조건부 등록자
 - 나. 당해 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3. 재학 중인 자가 본인 사망 또는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제적되는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학기 중 개인 사정으로 휴학(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5. 휴학생의 등록금 중 일부가 다음 학기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복학 시 이전 학기 등록금에 대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군입대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학기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포함)을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 휴학을 한 후 휴학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일반휴학에 준한다.
7. 개강 후 2주 이내에 일반휴학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전액 반환 처리된다. 다만, 신입생이 개강 후 2주 이내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첫 학기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한다.

제14조 (휴학원 제출) ①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 총 수업일수의 3/4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신학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납부기간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신학대학원장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장기 해외근무, 해외출장 및 장기 지방근무, 성직자·수도자들의 소임이동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2년까지를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박사과정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08. 1. 14>

④ <삭제 2008. 1. 14>

제15조 (유고결석) 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신학대학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제16조 (복학)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 개시일 전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여 신학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퇴학원”을 신학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적한다.

1. 학칙 제7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2. 학칙 제13조에 규정된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무단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15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하였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4. 이수한 전 교과성적의 누계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

제19조 (수료)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각 과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과정은 45학점(철학과 39학점), 석·박사통합과정 84학점, 박사학위 과정 중 신학전공은 90학점, 가톨릭사회복지학전공 60학점(석사학위 이수과정 포함)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 22>

2. <삭제 2008. 10. 23>

제5장 전과와 전공변경

제20조 (학과 및 전공변경) ① 재학 중 학과의 변경은 둘째 학기말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학과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변경 신청서를 신학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과와 학점

제21조 (교과목 편성) 신학대학원 교과목 편성은 다음과 같다.

100 - 199 : 석사학위 과정 기초과목

200 - 299 : 석사학위 과정 전용과목

300 - 599 :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공용과목

600 - 699 : 박사학위 과정 전용과목

제22조 (수강신청) ① 모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마지막 학기에 졸업소요학점이 부족한 때에 한하여 학과장이 승인할 경우 3학점을 추가하여 15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3>

③ 방학 중에 실시하는 실습과목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추가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23>

제23조 <삭제 2008. 10. 23>

제24조 (수강신청과목의 확인)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과목 확인 및 변경원을 행정팀에서 교부받아 본인의 수강신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수강과목의 취소)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후 4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과목 취소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학점이수) ① 석사학위 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22>

전 공 신학전공(39학점 이상), 철학전공(33학점 이상), 사회복지학 및 가톨릭사회복지학전공(42학점 이상)

타 학 과 6학점 이상(사회복지학 및 가톨릭사회복지학전공 3학점 이상)

학위논문 6학점

계 51학점 이상(철학전공은 45학점 이상)

다만, 각 소속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전공과목 대 타 전공과목의 비율을 학과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전공과목 중에서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 1. 22>

전 공 84학점 이상

계 84학점 이상

④ 박사학위 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학전공 90학점 이상(석사학위 이수과정 최대 45학점, 교회교수자격증(S.T.L.) 45학점 이상 포함)

계 90학점 이상

2. 가톨릭사회복지학전공 60학점 이상(동일전공 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 최대 24학점 포함)

계 60학점 이상 <신설 2011. 1. 22> 다만,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7조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입학전 본교 또는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졸업(수료)한 자의 취득한 학점은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2>

제28조 (타 대학원과 학점교환) 학생이 신학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타 대학원(서강대학교 대학원을 포함 한다)과 합의된 학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기 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타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15학점 범위 안에서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 (재수강) C나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0조 (조기졸업) ① 본 세칙 제27조에 해당되는 자 중 본 세칙 제26조에 따라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청구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였거나 또는 학점이수로 졸업자격을 인정 받을 경우 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② 과정별 지정된 수업연한 이전에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청구논문이 심사를 통과 하였거나 석사과정에서 학점이수로 졸업자격을 갖춘 자가 총성적평점평균이 4.15이상일 경우 학과장의 조기졸업 추천과 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석사 및 박사과정은 한 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두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위 ①항, ②항에 의한 조기졸업 희망자는 조기졸업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1. 1. 22〉

제7장 학업성적

제31조 (평가보류제도) ① 학기말까지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I(성적미확정)기호로 부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학기말 성적 제출기일 경과 후 담당교수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로 성적을 평가해 행정팀에 제출하면 'I'대신 그 성적평가가 학적부에 기재된다.

③ 성적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성적 평가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I'는 자동적으로 'F'로 된다.

제32조 (성적등급 이외 평가기호) 학칙 제28조의 등급 이외에 다음과 같은 평가기호를 사용한다.

R : C 또는 F성적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C 또는 F 성적을 대체하는 평가기호

P : 평점 또는 학점과 평점이 없는 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였을 때 부여하는 평가기호

제8장 자격시험

제33조 (외국어시험) ① 학위 취득 조건의 일환으로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각각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 1. 22〉

1. 본 대학원에서 출제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2.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플 CBT 방식 217점 이상이거나 IBT 방식 82점 이상. 다만, 해당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삭제) 〈2011. 1. 22〉

③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 1. 22〉

1. 본 대학원에서 출제한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2. 토익 800점 이상 또는 토플 CBT 방식 240점 이상이거나, IBT 방식 94점 이상 다만, 해당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입학당시 영어시험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세칙 제5조 ②항 1호에 의하여 영어시험을 면제 받은자는 자격시험을 치루지 않는다.

④ 전공에 필요한 각호의 고전어시험은 지도교수에게 일임한다. 다만, 고전어시험 면제 시 라틴어 3학점, 성서고전어 6학점의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1. 라틴어(교의, 영성신학 전공)
2. 그리스어, 히브리어(성서신학 전공)

⑤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 중에 실시하고, 외국어시험의 출제, 채점, 사정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⑥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종합시험 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제34조 (종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39학점 이상(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 72학점 이상 취득)을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2>

②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33학점(이수인정학점 제외)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하고 총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회교수자격증(S.T.L.) 이수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③ 종합시험은 전공영역 연구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각 학과의 내규로 정한 기준 [별표2] 에 의하여 시행한다.

④ 종합시험의 출제, 채점, 사정위원은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회, 박사과정은 2회에 한하여 재 응시 할 수 있다. 낙제과목에 의한 재 응시도 종합시험 전체 허용횟수에 가산한다.

제9장 학위논문

제35조 (논문이수계획서 제출) 석사학위 과정 학생의 학위논문선택 여부는 각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의 내규(교과과정)로 정하고 이에 관한 이수계획서를 3학기 초 신학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논문지도교수) ① 석사(학위논문 선택 자)학위 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 과정에서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학생은 반드시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는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매 학기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진실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2>

④ 논문지도교수 1인당 학기별 논문지도 배정 학생수는 석사학위과정은 5인이내, 박사학위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3인 이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원을 초과하여 논문지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할 수 있다. <신설2011.1.22>

⑤ 논문지도학생이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에 필요시 해당 논문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학생수 제한 등의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2011. 1. 22>

⑥ 신학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제청으로 타 대학의 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 (논문계획서) ① 학위논문을 제출할 학생은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 계획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는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매 학기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심사논문 제출) 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논문초고(석사학위 3부, 박사학위 5부)를 작성하여 논문제출 승인서와 함께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논문은 6월 또는 12월 첫째 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은 2회에 한한다. 다만, 논문심사 위원회와 신학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회까지 논문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신학대학원장이 임명한 논문심사 위원회가 행하며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 또는 인접분야의 전문가 중 논문 당 석사학위 경우 1인의 심사위원장과 2인의 심사위원, 석·박사통합과정과, 박사학위의 경우 1인의 심사위원장과 4인의 심사위원을 신학대학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타 대학교의 교수나 학계의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2>

② 심사논문 제출자는 행정팀에서 통지하는 심사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1차적으로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것일 경우 2차 면접시험에 부한다. 논문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은 내용심사와 면접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야 한다.

④ 논문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 과정은 심사위원 2/3이상, 석·박사통합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은 4/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논문심사 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소정서식에 의거 신학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완성논문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조건부합격 포함)된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팀에서 논문인준서를 수령, 완성논문(Hard Cover)을 인쇄하여 당해 제출기간 내에 소정의 부수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위수여

제41조 (학위수여) ①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 과정 이수계획에 의거 소요학점 및 총평점평균 3.0이상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고전어(박사학위과정)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석·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통과 하였거나 졸업소요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칙 제39조에 의한 학위를 각각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 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선택한 학생과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 과정 학생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11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42조 (공개강좌) ① 공개강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은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43조 (연구과정) ① 신학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입학할 수 있다.

② 입학이 허가된 연구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3)에 의한 연구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연구생은 매 학기 개설되는 교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수강,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생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각 과정에 준한다.

제12장 운영위원회

제44조 (설치) 본 대학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5조 (구성)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에 의거,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신학대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 (기능)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학과·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부 칙

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시행세칙과 동시에 종전의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이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시행세칙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 3조 제①항, 제12조 제③항 및 제⑤항, 제19조 제1호, 제26조 제①항, 제33조 제①항, 제34조, 제35조는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08. 1. 14>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신설 2008. 10. 23>

부 칙(2011. 01. 22)

7.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어시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33조 ②항 3호 삭제에 따른 석사과정 재학생들의 외국어교육원 취득성적은 개정 이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별표 1] 등록금 반환(이월) 기준

사 유 발 생 일	반환(이월)금액
개강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개강 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개강 일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개강 일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개강 일부터 90일 경과 후	반환(이월)하지 아니한다.

※ 비고

1. 신입생 휴학의 경우에는 위 반환(이월)기준에 따라 이월 된다 .
2.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경우 실제 납부한 총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납부금액에 대하여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
3. 반환(이월)금 계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